



제42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상자산 거래지원 절차 근거 신설 〉
■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75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석준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3. 19.
3. 회 부 일 : 2025.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절차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가상자산 상장절차와 관련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약체(DAXA)는 2024. 7.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를 발표하여 거래소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 모범사례는 자율규제에 지나지 아니하여 거래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에 관하여 관리·감독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 상장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거래지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지원을 하려는 경우 가상자산의 적합성 심사를 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이하 “거래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조치 명령 대상에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거래지원”이란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술적 지원, 용역의 제공 등 행위를 말한다.
<u><신설></u>	제9조의2(가상자산 거래지원 시 준수 의무)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하려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적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거래지원

현행	개정안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① (생략)	<u>위원회</u>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u>거래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u>
1. ~ 4. (생략)	1. <u>가상자산의 거래지원 개시</u>
<u><신설></u>	2. <u>가상자산 거래 유의종목 지정</u>
5. ~ 7. (생략)	3. <u>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u>
③ ~ ⑤ (생략)	4. <u>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서 가상자산의 거래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사항</u>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u>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심사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에 관한 사항</u>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과태료) ① ----- ----- -----.

현행	개정안
1. ~ 4. (생략)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u>가 상자산의 적합성을 심사하지 아니 하고 거래지원을 한 자</u>
5. ~ 8. (생략) ②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이란 가상자산거래소가 자기가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시장에서 특정한 가상자산이 거래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¹⁾

○ 이는 자본시장의 “상장”에 대응하는 개념²⁾으로, 자본시장에서의 “상장”이란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³⁾함.

1)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제2조(정의) ① 이 모범사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래지원”이란 가상자산거래소가 자기가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시장에서 특정한 가상자산이 거래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2)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자본시장에서의 “상장”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거래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오히려 거래“지원”이라는 용어 사용이 가상자산거래소로 하여금 법적 책임 부담을 지지 않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출처: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가상자산 관련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규제사항 검토 연구」, 2024. 5.). 이에 일부 보고서 등에서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상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장”이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장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각 목 생략)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장”이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장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각 목 생략)

- 금융정보분석원이 반기마다 발표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17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1,357개(중복 제외 시 598종)이며, 신규 거래 지원은 127건, 거래 중단은 31건으로 파악됨.

[표1]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지원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가상자산 종목 수(개)	1,257	1,371	1,362	1,399	1,333	1,207	1,357
- 중복상장 제외시(종)	623	638	625	622	600	554	598
신규거래지원(건)	140	282	74	169	169	157	127
거래 중단(건)	219	161	78	115	138	67	31

주1: 사업자가 작성·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

주2: 원화마켓과 코인마켓을 모두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각 연도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7월 제정되었으나, 거래지원에 관한 규율체계는 법률에 마련되지 않았음.

- 다만, 국회는 법률 제정 시 부대의견⁴⁾으로 거래지원과 관련한 내부통제와 투명한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금융당국

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4. 부대의견

- 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관련 자율협의기구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한 내부통제와 투명한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이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에 요구하였고, 이에 금융당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는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⁵⁾하였으며,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모범사례를 내규에 반영하여 적용 중에 있음.

[표 2]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심사기준	○ 형식적 부적합 사유* 해당 시 거래지원 불가, 질적 요건** 종합 고려, 적격 해외시장 상장 코인에 대한 요건 완화, 분기별 유지 심사 실시 등 * 사업계획등 중요사항 임의변경, 설명자료미확인, 원인미상보안사고 발생, 위법행위목적설계 등 ** 가상자산의 용도·목적·기능, 발행량·유통량, 사업 실재성·지속가능성, 발행 주체 역량·신용 등
심의절차	○ 독립된 심의·의결 위원회 설치, 분석보고서 등을 심의위원에게 사전 제공, 위원회 회의록을 기재하여 보관 등
정보공개	○ 중요 사항 설명자료 원문(백서) 및 설명서 등을 공개, 거래지원 수수료 부과기준 및 내용 공개
내부통제	○ 거래지원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저해 행위 금지, 정기적 감사 실시 등

(자료: 가상자산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선방안, 2025. 5.)

□ 그런데, 이와 같은 거래지원 체계는 자율규제에 불과하여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 거래지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지원을 하려는 경우 가상자산의 적합성 심사를 하도록 하며, 거래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에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5) 현행 모범사례는 【참고자료】 참조

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지원 체계를 법률에서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가상자산의 적합성이 충분히 검증된 것으로 인식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신뢰하고 거래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지원 체계를 법률에서 규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첫째, 가상자산의 적합성 심사 요건 및 절차의 적절한 위임방식과 위임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에게 가상자산 적합성 심사 의무를 부여하면서, 심사 요건 및 절차를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반면,
자본시장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가 증권의 상장기준·상장심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상장규정을 정하도록 규정⁶⁾하되, “상장규정이 증권 등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충분할 것”을 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상장규정)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3. 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장법인 및 상장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래소허가의 요건⁷⁾으로 하고, 상장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를 금융위원회의 승인대상으로 규정⁸⁾하고 있음.

- 자율규제로 운영하는 현재의 거래지원 체계와 비교할 때, 적합성 심사 요건 및 절차를 개정안과 같이 고시로 위임할 경우 이용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기에 유리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규율체계를 통하여 거래지원 여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반면, 「자본시장법」과 같이 심사 요건 및 절차를 가상자산거래소가 정하도록 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율성 확대 및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부실한 가상자산의 유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4. (생략)

5. 정관, 회원관리규정·증권시장업무규정·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시장감시규정·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 및 제373조의7에서 “정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 적합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할 것

6. ~ 9. (생략)

③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① 거래소는 회원관리규정·증권시장업무규정·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시장감시규정·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08. 2. 29.>

- 따라서,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 가상자산산업의 육성을 위한 규제 수준의 적절성, 주요국의 거래지원 입법례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요건 및 절차의 위임방식과 위임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거래지원 관련 제재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의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 제22조에서는 가상자산의 적합성을 미심사하고 거래지원을 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고의적으로 부실하게 적합성 심사를 한 자 등에 대한 제재는 이루어질 수 없음.

- 개정안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¹⁰⁾이 되나, 이러한 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이 전제되어야 가능함.

- 따라서, 거래지원의 적합성 미심사 외에 신규 거래지원 과정에서

9) 해외 주요국의 거래지원 관련 입법례(자료: 금융위원회)

(EU) 암호자산 백서(White paper) 규제를 마련하고, 백서의 당국 통보 및 공시 후 거래지원 가능
(미) 암호자산의 거래지원에 관한 연방법 차원의 규율체계는 없음.
(일) 법정협회의 심사를 받아 거래지원 가능. 최근 일본 금융청에서 규율체계 개선 논의 중임.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검사·조사·명령·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실심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 등을 제재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법령¹¹⁾은 기업공개(IPO)¹²⁾¹³⁾를 위한 주관회사가 협회가 정한 실사 기준¹⁴⁾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증권인수업무 또는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마.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실사를 하지 않거나 인수업무조서를 작성·보관하지 않는 행위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

12)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기업공개"란 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이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 및 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중 해당 법인이 상장되지 않은 다른 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를 말한다.

13) IPO는 기업실사,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 청약·배정, 상장 등의 절차로 구성됨.

14)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⑧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6호에서 "협회가 정한 기준" 중 실사와 관련한 기준은 주관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1. 실사책임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 중에서 선임한다)는 사전 실사계획 및 실사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실사 팀원이 수행한 최종 실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승인할 것

2. <별표 2> "기업공개를 위한 기업실사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사업무를 수행할 것

3. 경영권 변동가능성, 신규사업 추진 계획, 타법인주식 취득 계획, 자금조달 계획 등과 관련하여 경영진 면담을 필수적으로 실시할 것

4. 발행회사가 제출한 자료와 경영진의 주장에 대해 시중 정보 수집, 전문가 의견 확인, 회사 거래처 및 담당부서 직원 면담 등의 방법으로 검증할 것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시장-사업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법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운영 결과와 함께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진입규제, 발행·공시 및 거래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1

5. 청약일 전일까지 경영상 주요 변동사항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주요변동사항 발생시에는 증권신고서 정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

【참고자료】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제1조(목적) 이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을 심사 및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최소한의 공통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모범사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래지원”이란 가상자산거래소가 자기가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시장에서 특정한 가상자산이 거래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거래지원 신청인”이란 특정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자(이하 ‘발행주체’라 한다) 또는 발행주체로부터 운영 권한을 양도 또는 위임받은 자(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로서 해당 가상자산이 가상자산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거래지원을 신청한 자(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가 거부되거나 보완이 요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를 말하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로부터 거래지원 신청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지원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상자산을 말한다.
 4. “가상자산거래소”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거래업자)로 신고수리된 자로서, 다자간 경쟁매매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이하 ‘가상자산시장’이라 한다)을 개설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적격 해외가상자산시장”이란 해외 소재지국(해외 소재지국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소재지 州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다자간 경쟁매매 방식으로 운영하는 해외 가상자산시장을 말한다.
 6. “재거래지원”이란 가상자산시장에서 거래지원이 거부되거나 종료된 가상자산을 해당 가상자산시장에서 다시 거래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제1항 외에 이 모범사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련 법령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거래지원 심사절차 개시) ①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지원 신청인의 신청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절차를 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지원 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지원 신청 서류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거래지원 신청 서류가 이 모범사례 및 가상자산거래소가 정한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거래지원 신청 서류에 제4조에 따른 거래지원 심사 요건과 관련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는 경우
3.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이 공익 실현, 이용자 보호 또는 시장 관리 측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거래지원 심사 요건) ①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시장에 거래지원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되는 가상자산으로서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제공한 브릿지 기술에 따라 다른 블록체인에서 유통될 수 있는 다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래지원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발행주체의 신뢰성

가.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계획, 사업계획(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 현황 및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안사고 발생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이하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적시에 적절한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공시(변경공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않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수 차례 반복한 경우

나.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가상자산 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주요 지갑정보(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추정한 지갑정보를 포함한다)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단,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지갑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가상자산이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분산되어 보유하고 있는 등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보유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이용자 보호 장치

가.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백서)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분산원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감시수단(블록 익스플로러)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술·보안

가.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관리하는 가상자산 지갑 또는 가상자산이 발행·전송·저장되는 분산원장 등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거나 치유되지 않은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분산원장에 내재된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의 소스 코드가 확인되지 않거나 가상자산 발행·소각, 실행 권한자 변경, 계정 비활성화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건(이하 “중요 사건”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이벤트 함수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법규 준수

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8조제2호에 규정된 가상자

- 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라.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범규 우회, 불법도박 등 위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거나 실제 이러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 그 밖에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이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위반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온라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발행되어 용도, 목적 또는 기능이 불분명한 가상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 가. 해당 가상자산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커뮤니티 총 회원수가 10만명 미만, 분산원장 상 스마트 컨트랙트 혹은 메인넷의 연관된 거래기록(트랜잭션) 누적 건수가 100만건 미만(단, 해당 가상자산 발행 이후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0일의 누적 거래기록이 5만건 미만인 경우)}
- 나. 기술적으로 가상자산의 추가발행이 가능함에도 동 사실이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작성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설명자료 등에 사전에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 ②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발행, 운영, 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 사회적 신용 및 과거 사업이력
 2.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정도
 3.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계획, 사업계획의 변경 내역 및 정도, 변경에 필요한 절차의 존재 여부, 변경 절차의 투명성 및 합리성
 4. 가상자산 보유자의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관리하는 주요 지갑주소 공개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
 5.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및 유통량 규모, 가상자산의 온체인 거래 현황 대비 시가총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 가상자산 분배(Token allocation)가 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 여부
 6.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상장법인일 경우, 가상자산 판매자금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 현황의 가상자산 보유자와 이해상충 가능성
 7. 가상자산의 용도, 목적 또는 기능. 단, 제1항제5호의 온라인 콘텐츠에 기반하여 발행된 가상자산에는 동 호를 고려사항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음
 8.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의 실재성, 지속가능성(재원 확보없이 고율의 수익 약속 여부 등) 및 실제 진행 현황
 9. 온체인 보유자 수 증감 추이, 국내외 거래량, 유동성,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지원 현황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거래 및 채택 현황
 10. 가상자산 커뮤니티의 활성화도
 11. 거래지원하려는 가상자산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상충 가능성 및 이해상충 해소 방안 마련 여부

12. 가상자산이 발행·전송·저장되는 분산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 분산원장의 지나친 중앙화로 인한 집중 위험 존재 여부
13. 분산원장에 내재된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의 중요 사건과 관련된 함수에 대한 접근 통제권(Access Control)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③ 가상자산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이하 ‘심사항목’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내부규정으로 마련하고 동 평가기준에 따라 거래지원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④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이 합병, 영업·자산의 양수도(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관리하는 주요 지갑이나 스마트 컨트랙트의 관리계정에 대한 통제권 이전·추가 포함한다),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동일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시점에 지체없이 심사항목의 충족 여부에 대한 거래지원 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5조(대체심사 방안) ① 적격 해외가상자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는 감독당국이 관할권을 갖는 국가에 소재(이하 ‘해외 소재지국’이라 함)할 것
2. 해외 소재지국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진입규제가 존재할 것
3. 제2호의 진입규제에 따라 해외 소재지국의 권한있는 감독당국으로부터 그 나라의 법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을 것
4. 해외 소재지국의 권한있는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독 및 검사를 받을 것
5. 해외 소재지국의 법규, 권한있는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또는 개별 승인(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근거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내부 정책 또는 심사기준이 존재할 것
6. 가상자산 거래지원 후에도 거래지원을 위한 심사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심사기준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경우 거래지원을 종료할 것
7. 내부통제에 대한 내규가 존재할 것
8. 자국민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것
- ② 가상자산거래소는 제1항의 적격 해외가상자산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별도 심사없이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동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상자산거래소는 제1항의 적격 해외가상자산시장 중 2개 이상에서 6개월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별도 심사없이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가상자산 분석보고서) ①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지원하려는 가상자산이 거래지원 심사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개된 정보 및 가상자산거래소가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② 거래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거래지원 심사대상인 가상자산에 대하

여 심사항목별로 해당 부서의 의견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및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가상자산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거래지원 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가상자산 분석보고서 작성의 충실성 및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승인하여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 위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가상자산 분석보고서의 기재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는 거래지원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로서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 또는 조치대상으로 본다. 단, 제3항에 따른 거래지원 심사 총괄 책임자의 검토 과정에서 가상자산 분석보고서 기재 내용을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본다.

제7조(거래지원심의·의결기구) ①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심의·의결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심의·의결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내규로 정해야 한다.

② 가상자산거래소는 제1항의 심의·의결기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거래지원 심사대상인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임직원이 아닌 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내부 임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지 여부는 조직구성, 성과보상체계, 업무 연관성(거래지원 심사, 매출수익 관리, 마케팅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상자산거래소가 내규로 정한 기준과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3. 내규로 정한 심의·의결기구 의사정족수의 2배수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 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한다.

4. 가상자산거래소는 위원 평가 및 연임 기준에 관한 사항을 내규로 정하고, 위원을 연임하고자 할 경우 위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 대상 위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징구하여 제18조에 따른 거래지원 업무 관련 임직원의 준수사항 등을 점검해야 하며, 위반 사실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연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가상자산거래소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거래지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나.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또는 자기가 3년 이내 재직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다.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단체 등이 대리하거나 대리하였던 사항

라. 그 밖에 가상자산거래소가 내부규정으로 결격 또는 제척사유로 정한 사항

2.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무작위로 참여 위원을 선정한다.
3. 내부위원(가상자산거래소의 임직원 중 위원으로 위촉된 자를 말한다.)의 비율은 100분의 6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있다.
- ④ 위원 본인이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 회피하여야 한다.
- ⑤ 가상자산거래소는 위원과 가상자산 거래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제한, 거래지원 관련 정보의 접근권한 제한 등에 대한 내부규정을 적절하게 제정,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거래지원 심의·의결절차) 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 모범사례 및 내부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지원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 가상자산거래소는 제6조에 따라 작성된 가상자산 분석보고서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거래지원 심의·의결이 있기 2일 전까지 거래지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에서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 및 결과,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 위원별 찬반 여부, 결정사항 등을 문서(이하 ‘회의록’이라 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동 회의록을 참석자 전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는 대면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천재지변·유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위원이 서면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대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심의 단계에서 논의한 내용과 서면으로 참석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위원간 상호 공유하여 위원들이 최종 의결권 행사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의 판단 근거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여부에 대한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의 결정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작성된 가상자산 분석보고서,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료, 재심을 요구한 정당한 사유 및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를 거래지원 심의·의결이 있기 2일 전까지 거래지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한 내용 및 결과,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 등에 관해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동 회의록을 참석자 전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의결기구의 과반수 이상이 최초 거래지원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⑧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의 거래지원 결정은 거래지원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9조(정보공개) ① 가상자산거래소는 제8조에 따라 거래지원이 결정된 가상 자산에 대하여 실제 거래지원을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내용을 자기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작성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 원문 또는 자료 원문이 게재된 웹사이트 주소
2. 제1호 설명자료 전문의 주요 내용 및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최신 변경내용을 기재한 한글 자료
3. 가상자산거래소가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한 가상자산 설명서
4. 최근 6개월간(발행된지 6개월 미만의 가상자산의 경우 발행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을 공시하기 위해 사용한 전자적 매체의 주소
5.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발행 및 운영하는 가상자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상 식별정보 및 방법(블록체인 익스플로러를 통한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 등 확인)
6. 향후 가상자산거래소가 주기적으로 제1호부터 제5호의 자료를 점검할 예정인 점

② 가상자산거래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내부규정에 따른 권한있는 자로부터 해당 자료가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명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 가상자산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자료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점검결과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지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가상자산거래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된 자료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 아니한다는 점을 자료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및 연부과금) ①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지원을 개시하는 대가로 일체의 재산적 가치있는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거래지원 개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거래지원 개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거래지원하는 기간 동안 가상자산 거래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연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가상자산거래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연부과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거쳐 비용의 세부 항목별 부과 기준과 금액을 정해야 한다.

④ 제3항의 부과 기준과 금액은 거래지원 개시 대상 가상자산에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1년 단위로 그 적정성을 점검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⑤ 가상자산거래소는 제3항의 부과기준과 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사회 결의 익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가상자산거래소는 제3항 내지 제5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기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거래지원 유지심사) ①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되는 가상자산으로서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제공한 브릿지 기술에 따라 다른 블록체인에서 유통될 수 있는 다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유지심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로 인해 해당 가상자산이 신뢰성을 상실한 경우
2.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로 인해 해당 가상자산이 신뢰성을 상실한 경우
3. 제4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4.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5.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6.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7. 제4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8. 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9.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10. 제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11. 제4조제1항제4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12.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로 인해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켰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제4조제2항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 거래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켰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4.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존립과 관련된 사유로 인해 가상자산의 운영 또는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유지심사 및 거래지원 종료심사를 포함한다)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거래지원 개시 이후에 발견된 경우
16. 국내외 거래소의 합산 시가총액이 내규로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예, 2분기 연속으로 분기중 30일 이상 40억원미만},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규모가 내규로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예, 2분기 연속으로 국내외 거래소의 합산 시가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가상자산 중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자사거래소 및 타 원화거래소의 분기 일평균 거래회전율(일평균 거래규모/해당 분기말 이용자 보유잔액)이 모두 100분의 1에 미달} 등 거래지원을 유지함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의 사유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거래지원심의·의결기구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을 종료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제4조에 따른 거래지원 심사 당시 제5조제2항에 따라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동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 가상자산은 적격 해외가상자산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동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5조제3항에 따라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 가상자산의 경우 2개 이상의 적격 해외가상자산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동안 제11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가상자산이 적격 해외가상자산시장에서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래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거래제한 또는 거래종료 조치가 취해진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지원 유지심사일에 제1항에 따른 거래지원 유지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내부규정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른 권한있는 자가 거래 유의종목으로 우선 지정 후 2주 이내에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의 심의·의결을 받거나, 거래유의 종목 지정을 위한 거래지원 심의·의결 절차에서 곧바로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거래 유의종목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절차는 제8조제1항부터 제6항을 준용하되, 재심의하는 경우 심의·의결기구의 과반수 이상이 유의종목 지정심사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가상자산 분석보고서”는 “가상자산 유의종목 지정 검토보고서”로 본다.

⑤ 가상자산거래소는 제3항에 따라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을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거래 유의종목 지정 사실, 지정 사유 및 기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내역 등을 자기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신이 운영하는 하나의 시장(예:KRW마켓)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시장(예:BTC마켓)에서 추가로 거래지원하고자 할 경우 이 조에 따른 유지심사를 실시하고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때를 기준으로 양 시장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유지심사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거래지원 종료심사) ①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경우: 1개월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의 경우: 2개월
 3. 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6호의 경우: 3개월
 4. 제1항제17호의 경우 거래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간 중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 ③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는 거래 유의종목 지정 이후에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거래지원 종료 결정시 고려할 수 있다. 이때,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 유의종목 지정 기간 동안 각 호의 사유를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거래지원 종료심사의 심의·의결절차는 제8조제1항부터 제7항을 준용하되, 재심의하는 경우 심의·의결기구의 과반수 이상이 거래지원 종료심사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가상자산 분석보고서”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검토보고서”로 본다.

제13조(거래지원 종료절차) ① 가상자산거래소는 제12조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거래지원 종료일 및 정리매매 기간, 가상자산 출고기간 및 방식 등을 해당 가상자산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거래지원 종료가 예정된 가상자산의 정리매매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서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③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지원이 종료된 가상자산에 대하여 내부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네트워크 업데이트 등 기술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및 기술지원 종료사실을 자기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에 사전에 명확히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하며, 기술지원을 할 경우와 비교하여 과도한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지원이 종료된 가상자산의 출고기간, 이용자가 거래지원이 종료된 가상자산을 미수령할 경우의 처리방안 등을 내부규정 및 거래약관 등에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재거래지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최종적으로 거래지원을 거부하거나 종료한 날로부터 1년간 다시 해당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

1. 거래지원 심사 결과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지원이 거부된 경우
2. 제12조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내려진 경우

② 거래지원 거부 결정 또는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하여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심의를 이루어진 결과 최종적으로 거래지원 또는 거래지원 유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신청에 따른 거래지원의 특례) ①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지원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거래지원 심의·의결의 결과와 그 사유,

제11조에 따른 거래지원 유지심사 심의·의결의 결과와 그 사유, 제12조에 따른 거래지원 종료 심의·의결의 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지원 신청인에 대하여 거래지원 기간 동안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일체의 기록을 유지·보관할 의무와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 등을 가상자산거래소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6조(거래지원 시 준수사항) ① 가상자산거래소는 제8조의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거래지원 개시를 결정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거래지원 초기 단계에서 급격한 가격 등락 없이 적정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내규로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 최근 거래지원한 가상자산의 유통물량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원활한 거래지원을 위해 매매개시 전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최소 입고규모(예, 최근 2개분기 동안 매매개시 후 1시간 동안 가격등락폭(시초가 대비 최고가와 최저가의 가격차이)이 100% 이하로 유지되었던 신규 거래지원 가상자산의 매매개시 당시 입고량 중간값 또는 평균값의 1/2)
2. 입고물량, 주문량 및 체결가의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적정가격 형성을 위해 주문방법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주문방법 및 주문방법 제한 시간(예, 매매개시 시각으로부터 2시간동안 시장가·예약가 주문 제한)
- ② 가상자산거래소는 예정된 거래지원 매매개시 시점까지 제1항제1호의 최소 입고규모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거래지원 개시시각을 연기하여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소가 매매개시 시각을 예정 대비 6시간 이상 연기하였음에도 최소 입고규모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자 보호에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거래지원을 개시할 수 있다.
- ③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지원 개시 관련 사항을 자기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에 고지할 때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매매개시 시각이 연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야 하며, 매매개시 시각을 연기하는 경우 연기 후 예정 매매개시 시각을 추가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④ 가상자산거래소는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기구에서 가상자산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문창, 팝업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 ⑤ 가상자산거래소는 제4조제1항제5호의 온라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발행되어 용도, 목적 또는 기능이 불분명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이용자가 해당 가상자산의 특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목록 상 다른 가상자산과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17조(코인마켓거래소에 대한 특례) ① 특금법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 규정된 가상자산거래소(이하 “코인마켓거래소”라 한다, 이하 같다)가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있는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이하 “원화마켓거래소”라 한다, 이하 같다)가 이 모범사례에 따라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코인마켓거래소는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원화마켓거래소가 이미 공개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출처를 정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거래지원 업무 관련 임직원등의 준수사항) ①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지원 업무(거래지원, 거래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종료 관련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담당하는 임직원 및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를 구성하는 위원은 이용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정직하고 공정하게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거래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및 거래지원심의·의결 기구를 구성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내부규정 또는 위촉 계약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 제한(타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행위를 포함한다)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가상자산 거래지원 업무 관련 정보, 거래지원과 관련된 회사 실적 등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가상자산 또는 주식 등의 투자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발설하는 행위
3. 거래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재산적 가치있는 금품 또는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있는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4. 거래지원, 거래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종료가 진행되는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거래지원 업무의 공정성 또는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시키는 일체의 행위

③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신고받아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제한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점검대상 가상자산계정의 범위, 점검방법 및 주기, 점검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마련·운영한다. (예, 임직원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 및 보유내역을 최초로 신고받은 후 분기별로 대상 임직원의 1/4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징구하여 점검)

④ 가상자산거래소는 감사부서 또는 감사가 정한 자(감사부서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거래지원 임직원 등의 금지행위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사 시기,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으로 마련·운영한다.

⑤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내부규정에 따라 위반 행위자를 징계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기록·유지) ①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분석보고서, 가상자산 유의종목 지정 검토보고서,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검토보고서, 가상자산심의·의결기구의 회의록 등 거래지원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15년간 기

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내규 관련 권한과 의무) ① 가상자산거래소는 현재 운영중인 내부규정의 내용이 이 모범사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미달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 모범사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이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한 것으로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 모범사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추가적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가상자산거래소는 내부규정으로 정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및 거래지원종료 기준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 현황, 규제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이 모범사례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